

실거주 확인서

거주인 (임차인)	성명	
	주소	
	생년월일	
	연락처	
주거형태	[] 고시원 [] 쪽방 [] 여인숙 [] 종교시설 [] 상업시설 [] 공장시설 [] 기타()	
거주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
임대료	월 원 (보증금 : 원)	

위와 같이 거주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거주 제공자(임대인) 확인

성명 : (인)

주소 :

생년월일 :

연락처 :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